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대 중 문 화 예 술 산 업 발 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9조 4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중문화예술인 교육 전문기관 규정(제9조의2 신설)

- △한국콘텐츠진흥원, △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△그 밖에 대중문화 예술산업 관련 기관·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·단체 중 어느 하나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4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 조화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대중문화예술인 교육 전문기관)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
1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
2.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
3.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·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제16조제1항제9호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”를 “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대중문화예술인 교육 전문기관)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</u> <u>1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</u> <u>2.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</u> <u>3.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·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</u>
제1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 ~ 8. (생략) 9. 법 제41조제1항제7호·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·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<u>제3</u>	제1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----- <u>제4</u>

<u>항</u>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② (생략)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29조에 따른 <u>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</u>에 대한 교육 3. (생략) ④ (생략)	<u>항</u>----- 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63